

영남대학교병원
다문화가족 행복지킴이 치료비 지원사업
업 무 매 뉴 얼

사회사업팀

2021. 03. 02

오늘날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적과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 함께 같은 공간에 삶의 터전을 꾸리고,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언어와 문화, 풍습이 공존하는 다문화 가족은 이제 우리의 이웃사촌입니다.

다문화 사회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고, 그들과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게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전문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영남대학교병원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고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과 함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들의 치료를 돕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대구광역시 남구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무료건강검진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함께 『YUMC 다문화가족 행복지킴이 치료비 지원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2018년에는 경상남도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다문화 가족들이 적절한 시기에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도약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병원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다문화 가족의 질병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극복 및 가족관계증진을 위하여 심리적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들이 치료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I. 사업개요

1. 목적

- 다문화가족 구성원 모두가 피부색, 언어, 문화적 차이로 구별되기 이전에 모두 건강할 권리를 가진 존엄한 존재로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며,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건강문제를 지원한다.
- 다문화가정 스스로가 긍지를 가지고 정체감을 확립하는 동시에 다양한 배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도모한다.
- 다문화가족들이 겪고 있는 조기출산의 경험과 다양한 질병, 언어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양육문제 및 우울, 스트레스, 가족갈등 등에 적절히 개입하여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의료적 접근은 의료공헌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증질환으로의 확대를 예방하고 건강회복을 도모한다.

2. 필요성

- 오늘날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으며, 향후 10년 내 전체 인구의 1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다민족, 다문화가족들이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융화될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
- 다문화가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대상자의 욕구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가 용이하다.
- 표면화되는 질병에 대한 치료비 지원 외에도 우울, 스트레스, 학교 부적응, 언어 및 발달지연 등 다문화가족 내면에 내재된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 지방자치 단체와의 협력으로 의료적인 지원 외에도 다문화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조기 발견하여 개입 및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다.

3. 사업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조(목적)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들이 제1항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 사업내용

- 가. 사업명 : YUMC 다문화가족 행복지킴이 치료비 지원사업(7주기)
- 나. 사업범위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 다. 사업기간 : 2021년 3월 1일 ~ 2022년 2월 28일(1년)
 - ※ 연속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1년 단위로 사업평가 후 재구성.
- 라.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문화가족
- 마. 지원내용 : 대상자별 맞춤형 의료서비스(검사비, 외래 및 입원진료비)
 - ※ 지원대상자 심사기준 및 지원항목 참고
- 바. 지원금액 : 대상자별 200만원 한도 내 지원(가구원별 별도 심사)
 - ※ 고액의료비 발생시 2차 심의를 통해 2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 사. 사업예산 : 금일억원정(₩100,000,000-)
- 아. 예산항목 : 영남대학교병원 사회복지교직원후원금

II. 대상자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검사 및 치료(외래·입원)가 필요한 **국내 거주 저소득 계층 다문화 가족**
 - ※ 주 거주지가 해외인 다문화 가족 또는 치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한 자는 제외
- 저소득 계층 다문화 가족이라 함은 심사기준(질병, 소득,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2. 심사기준

가. 질병기준

- ① 질병, 진료과 제한 없음.
- ② **3차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질병**(신청 시 진단서 또는 진료의뢰서 필수)
 - ※ 대형병원 쓸림현상 방지 및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하여 단순 감기를 포함한 당뇨 및 고혈압 등 1차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③ 단순 예방적 차원의 진료 및 치료는 지원 불가(예: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④ 미용, 성형 목적의 치료 또는 그 부작용으로 발생한 치료는 지원 불가
- ⑤ 초기 장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치료비는 지원 가능하나, 장애등급 재판정을 위한 진료 및 검사비는 지원 불가

나. 소득 및 재산기준

▪ 소득기준

- ①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다문화 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함.
- ②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포함
- ③ 소득확인이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단

[표 1]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건강보험료 기준

(단위:원)

| 구 분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중위소득 |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 기준중위소득 | 80% | 1,462,265 | 2,470,463 | 3,187,160 | 3,901,032 | 4,605,898 | 5,302,882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 50,156 | 84,793 | 109,494 | 134,046 | 159,583 | 182,541 |
| | 지역 | 11,670 | 48,962 | 99,230 | 125,647 | 160,445 | 190,479 |
| | 혼합 | | 85,605 | 110,271 | 135,612 | 161,571 | 185,377 |

- ※ 건강보험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구세대원 전체 보험료를 합산 적용함.
- ※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함.
- ※ 건강보험료 적용기준은 신청일 전월 산정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 2021년 기준중위소득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적용함.
- ※ 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표 적용기간 : 2021.1.1.~2021.12.31.(매년 공시지표 활용)

▪ **재산기준(보험, 부동산, 자동차)**

① 민간보험 지원대상자는 지원 불가

단, 민간보험 가입대상자 중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

※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개별 대상자에게 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민간보험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심의 후 민간보험 가입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취소 및 지원금액 전액을 환급 조치함.

②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합산액이 최고재산액 300% 이하일 경우

[표 2] 2021년도 재산 기준

(단위:천원)

| 구분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최고재산액 | 농어촌(군) | 45,855 | 57,700 | 66,127 | 74,555 | 82,983 | 91,411 |
| | 중소도시(시) | 50,855 | 62,700 | 71,127 | 79,555 | 87,983 | 96,411 |
| | 대도시 | 70,855 | 82,700 | 91,127 | 99,555 | 107,983 | 116,411 |
| 최고재산액 (300%) | 농어촌(군) | 137,565 | 173,100 | 198,381 | 223,665 | 248,949 | 274,233 |
| | 중소도시(시) | 152,565 | 188,100 | 213,381 | 238,665 | 263,949 | 289,233 |
| | 대도시 | 212,565 | 248,100 | 273,381 | 298,665 | 323,949 | 349,233 |

※ 재산기준 :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실거래가 또는 임대보증금

※ 부채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 적용 가능

③ 사용연수 5년 미만의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생계용 차량은 예외.

다. 대상자 기준

① **다문화가족의 세대원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동거 가족으로 제한함.**

※ 한국 국적의 결혼이민자의 시부모 또는 장인부모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로서 1년 이상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자로 정의한다.

② 가족 초청으로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부모 및 종전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세대원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 단, 주민등록법상 1년 이상 동거 사실이 확인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병원 내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검토한다.

③ 다문화가족 대상자가 이혼 후 단독세대로 국내에 거주할 시에는 대상에서 제외함.

※ 단,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④ 주 거주지가 해외인 다문화 가족과 치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한 자는 제외한다.

⑤ 북한 이탈주민(새터민)을 다문화 지원사업 대상자로 포함한다.

III.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대상자별 200만원 한도 내 지원

- ※ 가구 단위별 지원대상수 제한 없음. 단, 가구원별 별도 심사 진행.
- ※ 입원·수술비 500만원 이상의 의료비 과부담 가구는 특별 심사를 통해 최대 400만원 지원.
- ※ 정부기관 및 외부기관 지원대상자는 본인부담 초과금 발생 시에만 지원.

[표 3] 지원금액

| 의료비(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비 고 |
|------------|------------|-----------|
| 200만원 미만 | 실비 지원 | 외래·입원 |
| 200만원 이상 | 2,000,000원 | 외래·입원 |
| 500만원 이상 | 4,000,000원 | 입원·수술로 제한 |

■ 지원대상자 1인당 최대 지원금액(400만원)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 대상자별 신청 횟수 제한은 없으나, 1인당 최대 지원금액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동일 질환에 대해서는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

- ※ 신청 질환에 대한 지원금은 지원기간(선정일로부터 6개월) 내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외에는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단, 1인당 최대 지원금에서 실제 사용한 진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 다른 질환으로 재신청 가능함.

예시) 발달지연 검사 및 치료비로 200만원 지원 받았으나, 지원기간 동안 사용한 진료비는 100만원이었다. 향후 사시로 안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재신청 가능.

2. 지원항목

가. 지원 가능 항목

- ① 질병으로 인한 검사비, 외래 및 입원진료비, 기타 치료비(재활치료, 심리치료 등)에 대해 심사 후 지원결정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질병에 따라 지원결정 금액은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 ②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 : MRI 외 특수검사 등)에 대해 지원하며, 전문의 소견 상 격리치료가 필요하거나 병실부족으로 인한 상급병실료 차액은 제한적으로 지원

- 격리치료 : 전문의 소견 확인 후 일수 제한 없이 지원
- 병실부족 : 원무팀 병실 현황 확인 후 최대 3일간 지원

[표 4] 세부 지원항목 예시

| 대상자 | 기본항목 | 별도항목 |
|-------|----------------------------|--|
| 결혼이민자 | 질병으로 인한 검사, 외래, 입원, 수술비 | 산전검사 및 분만비 지원 가능 정신과적 치료비(부적응, 스트레스 등) |
| 가족 | | 재활치료비(언어 및 발달지연 등) 정신과적 치료비(우울, 행동장애 등) |

나. 지원 제외 항목

- ① 심의 후 지원결정 된 질병 이외의 치료는 지원 제외함.
※ 지원결정 질병 진료 중 발견된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의료적 소견을 확인한 뒤 지원이 가능.
※ 대상자 개별요구에 의한 다른 질환 추가 지원의 경우에는 1인당 지원 한도금액 잔액 범위 내에서 추천 기관으로부터 재신청 가능합니다.
- ② 병실부족으로 인한 기준일(3일) 이상의 상급병실료는 지원 제외함.
※ 상급병실이라 함은 특실, 1인실, 2인실로 규정합니다.
- ③ 제증명료, 보호자식대, 종교적 신념에 의한 선택적 치료(무수혈)는 지원 제외함.

다. 지원 불가 항목

- ① 단순 예방적 차원의 진료 및 치료는 지원 불가(예: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② 미용, 성형 목적의 치료 또는 그 부작용으로 발생한 치료는 지원 불가
- ③ 장애등급 재판정을 위한 진료 및 검사비는 지원 불가
- ④ 산후조리비, 간병비는 지원 불가
- ⑤ 충치, 보철 및 교정 치료는 지원 불가
- ⑥ 알코올 중독과 같은 만성 정신질환은 지원 불가
- ⑦ 수납완료 및 치료 종결 후 지원은 불가

3. 지원기간

- 치료비 지원기간은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로 설정한다.

단, 지원기간 내에는 1인당 지원 한도금액 내에서 추가서류 없이 증액심사가 가능하며, 증액 심사일로부터 6개월로 치료비 지원기간이 연장된다.

- 검사 및 외래진료비의 경우에는 심사 후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간 지원한다.

심사 전 납부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

- 입원 및 수술비의 경우에는 해당 입원기간 첫날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단, 중간 정산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
- 치료비 지원기간 종료 후에는 추천 기관으로부터 재신청 받아 심사를 진행한다.
※ 지원기간 종료 후에는 동일 질병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단일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지원기간 종료 전에 증액 및 기간연장 심의를 요청한다.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의 경우에는 공통서류 제출로 서류를 간소화 한다.

IV. 지원 절차

1. 대상자 추천

- 거주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
-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진
- 다문화가족 대상자의 개별 신청은 불가

※ 다문화가족 대상자 개인별 직접 신청을 제한하는 사유

정부기관 및 지역사회 기관과 병원이 협력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의료적 지원 외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연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본 사업의 취지를 적극 반영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치료비 지원신청을 요청받은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의료적인 문제 외에도 기타 다른 어려움이 있는지를 신속히 평가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는 등 다문화 가정의 생활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2. 신청 절차

가) 추천기관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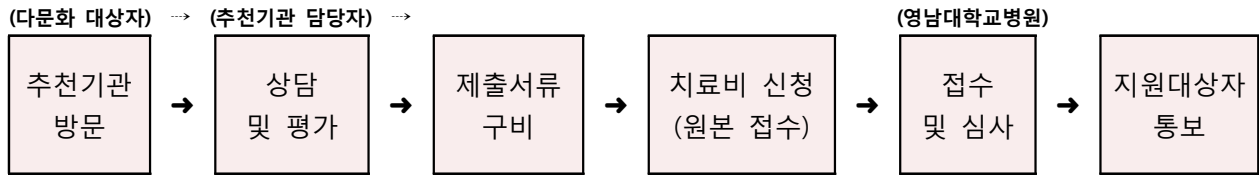
- 추천기관은 치료를 요하는 다문화 가족구성원과의 상담을 통해 경제적 상황, 심리사회적 상황에 대한 기초정보를 수집
- 본 사업 대상자로서의 적합성 검토

나) 제출서류 구비

- 추천기관 담당자는 지원신청서[서식1] 작성
- 환자 및 보호자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2] 작성
- 자격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추천기관 공문과 함께 치료비 지원 신청

※ 공통서류와 자격에 따른 개별서류는 [표 6]을 참고

[표 5] 대상자 신청 절차



[표 6] 자격별 구비서류

| 구 분 | 구 비 서 류 | | | | |
|------|--|---|------|---|------|
| 공통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비 지원신청서(서식1 : 추천기관 담당자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2 : 환자 및 보호자 작성) • 진료의뢰서 및 진단서(의료기관 발급) • 주민등록등본 (★ 결혼이민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제출 필수) | | | | |
| 개별서류 | 수급자 차상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증명서 | | | |
| | 저소득계층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table border="1"> <tr> <td>재산서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확인서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td> </tr> <tr> <td>소득서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또는 소득금액증명원(무직-사실증명원)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td> </tr> </table> | 재산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확인서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소득서류 |
| 재산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확인서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 | | |
| 소득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또는 소득금액증명원(무직-사실증명원)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 | | |
| 비 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모든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 (단, 진료의뢰서 및 진단서와 같은 의료법상 의무기록은 예외) • 의료급여 대상자 : 2차 병원 진료의뢰서(또는 진단서) 필요 건강보험 대상자 : 1, 2차 병원 진료의뢰서(또는 진단서) 중 택 1 • 진료의뢰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지원심의를 진행하므로 다수의 질병일 경우에는 진료과별 진료의뢰서 각각 첨부 요청(기재되지 않은 질병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 소득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상 명시되어 있는 성인 세대원 모두 제출 | | | | |

[세부안내]

- 치료비 지원신청서[서식1]는 추천기관 담당자가 작성합니다.
- 영남대학교병원은 3차 의료기관으로 1차, 2차 병원에서의 진료의뢰서(또는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지원신청 시 공통서류로 분류 되었으며, 추천기관 담당자 초기 상담 시에도 진료의뢰서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치료비를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 : 2차 병원 진료의뢰서(또는 진단서) 필요
 - 건강보험 대상자 : 1, 2차 병원 진료의뢰서(또는 진단서) 중 택 1

- 본원에서 진료 중인 대상자의 경우에도 지원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진단서(또는 협진의로서)를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 진료의로서 및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지원 심의를 진행하므로 다수의 질병일 경우에는 진료과별 진료의로서를 각각 첨부하시고, 복합적인 질병일 경우에는 의사소견이 상세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권고 합니다. 기재되어 있지 않는 질병의 경우에는 향후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신분증(외국인신분증 또는 여권)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 며, 모든 구비서류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성별)만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 결혼이민자의 한국 국적 취득으로 다문화 가족 확인이 어려울 시에는 기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 시길 바랍니다.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서류 간소화를 위해 공통서류와 함께 관련 증명서만 제출.
- 소득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상 명시되어 있는 성인 세대원 모두 제출.
-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병원 내 문서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보관 및 폐기됩니다.

다) 신청방법

-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함.
- 응급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메일 또는 팩스접수 후 원본 우편접수 가능
 - 접수처 : 우)42415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영남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
 - 전 화 : 053) 620-4495~8 / 팩 스 : 053) 623-8061
 - 메 일 : yumckjy@ymc.yu.ac.kr

라) 심사 및 지원결정

- 신청접수 : 수시 접수
- 심사 및 지원결정 : 접수 후 2주 이내(주 1회 심사진행)
단, 응급치료를 요하는 사항은 접수 후 3일 이내 긴급심사 진행
- 지원사실 통보 : 지원대상자에게는 유선 통보하며, 추천기관에는 요청 시 지원결정 공문 을 발송

3. 진료 절차

- 진료과 협의 및 특진교수 진료일자가 다르므로 대상자가 병원 내원 전에 반드시 확인 후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길 바랍니다.
- 진료사전에 예약 : 전화진료예약(053-620-4030) 또는 진료의뢰센터(053-620-4693) 문의
- 최초 진료 당일은 사회사업팀(053-620-4495~8)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V. 업무협조

1. 업무협조요청

- 가. 영남대병원 다문화가족 치료비 지원사업 홍보
 - 홍보 포스트 부착 및 리플렛 배부
 - 추천기관 홍보 및 실무담당자에 대한 업무매뉴얼 안내
- 나. 치료비 지원 대상자 초기 상담 및 추천
 - 신청 대상자 초기 상담
 -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하여 치료비 지원 신청
- 다. 의사소통 지원서비스
 - 한국어가 미숙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진료 시 통역서비스 연계
- 라. 정부 및 외부 의료비 지원 체계 협조
 -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과다할 경우 긴급복지지원 등 의료비 지원체계 연계

2.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연계

- 치료 종결 후 추천기관에서의 지속적인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 의료적 욕구 외 다문화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자원 연계
- 보건, 복지, 교육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연계

3. 문 의 : 영남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 담당자 김재영 Tel 053.620.4495